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72755 판결 [공사대금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72755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소23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주식회사

5. E

피고, 항소인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서영민

변론 종결 2020. 4. 23.

판결 선고 2020. 5.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소 23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원, 원고 B에게 3,520,000원, 원고 C에게 1,320,000원, 원고 D 주식회사에게 2,131,991원, 원고 E에게 2,4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G 토지의 소유 명의자로서 남편인 H에게 일임하여 2018. 7. 경 위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I와 사이에, 원고 A과 원고 E은 중장비를 대여하고, 원고 B과 원고 C는 인력을
공급하며, 원고 주식회사 D은 콘크리트를 납품하는 내용의 각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완료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

1	A	중장비 대여	600,000원
2	B	인력 공급	3,520,000원
3	C	인력 공급	1,320,000원

1	A	중장비 대여	600,000원
4	주식회사 D	콘크리트 납품	2,131,991원
5	E	중장비 대여	2,4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대리인이자 피고용인인 I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또는 I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주로서 I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하였을 뿐 I에게 피고를 대리하게 하거나 I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미지급금은 원고들이 I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피고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이 사건 미지급금과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5 내지 17, 19 내지 2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 특히, ㉠ I는 피고의 남편인 H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하면서 인부를 조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 I는 H에게 매일 저녁마다 현장 사진과 결제 내역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공사비용에 대하여 결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피고는 2018. 7. 23. 원고 E에게 굴착기 대여금 3,000,000원(2018. 7.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착기를 대여한 대금) 및 2018. 7. 25. 원고 A에게

자재대금 2,442,000원(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갈 등의 골재를 공급한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던 점, ㉔ 피고와 I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과 공사대금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작성한 바가 없고, 다만 I는 이 사건 공사의 견적을 내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 측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금원일 뿐이며, I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관련 소송에서도 I는 2018. 9. 13. 피고를 상대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자신의 인건비와 대납한 인건비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가소11020(본소), 2018가소12344(반소)]를 제기하였던 점, ㉕ H는 'I가 1,709만 원의 견적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불가능함에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I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I는 H로부터 일당을 받고 고용된 자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H가 지급한 금원은 실제 공사를 행한 업자들이 받아야 할 몫으로 I의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던 점, ㉖ 당심 증인 H는 피고 주장과 같이 I가 수급인일 뿐 피고의 대리인 또는 피고용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매일 저녁마다 I로부터 공사 현장사진을 받았고 I의 말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직접 공사비 등을 지불하였다는 것이고, 그 밖에 앞서 본 사실관계, H가 피고와 부부관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H의 위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I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원, 원고 B에게 3,520,000원, 원고 C에게 1,320,000원, 원고 D 주식회사에게 2,131,991원, 원고 E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판사조서영

판사신유리